

서류확인 및 접수확인자	담 당	책임자

20 ㄴ ㄹ ㅁ

기업명		DB계좌번호	
가입자성명		생년월일	*동명이인 또는 주민번호 앞자리가 동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입사일자			

퇴직일자			퇴직급여총액	지급방식	☐ 전액지급 ☐ 적립비율지급
지급형태	☐ IRP이전(의무)		지급신청금액	원	
	☐ 요구불계좌	IRP의무이전 예외사유 ☐ 만55세 이후 퇴직 ☐ 300만원 이하 퇴직금 지급 ☐ 가입자 사망 ☐ 한시적 체류자격 외국인	(필요시 기재) 기업으로 반환 신청 *기업반환계좌로 반환	☐ 퇴직소득세 : _____ 원 퇴직소득세만 기재(원단위 절사) DB→요구불 전액 지급시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 미기재) ☐ 국민연금전환금 : _____ 원	
예약지급일 ^{주1)}					

IRP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요구불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아래 **상품매도 순서 지정 또는 출력물**로 제공하는 ‘퇴직연금 상품지정 매도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상품 매도금액은 신청한 금액의 100%를 매도합니다. 단, 수익증권은 105% 매도하여 지급하고 상품 매도 후 남은 금액(이자 포함)은 미운용자산으로 처리됩니다. 지급신청금액보다 부족한 경우 은행이 정한 매도순서(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4조 ‘적립금 자산의 매각순서’)로 상품을 매도하여 지급합니다. 추가 매도에 따라 지급일자가 지연될 수도 있으며, 상품매도에 따른 지연인 경우 지연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매도순위	상품명	계좌번호	매도금액 (원/좌)

지급 지연시 가입자 동의	본인은 사용자(회사)와 합의에 의하여 법정지급기한(14일)을 초과하여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경우에만 작성)			가입자 :	서명 또는 (인)
가입자 단독청구	☐ 업체 폐업 ☐ 기타 (사용자 지급 거절 등)		영업점 본인확인		

가입자: 서명 또는 (인)



하나은행

[은행의 책임있는 사유로 급여지급 처리 지연시 지연보상금 지급 안내]

- 은행의 퇴직연금 계약서(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신탁계약)에 의거 금전으로 지연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지연보상금은 급여지급 신청일(신청서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주1)을 초과한 경우 발생하며, 급여지급 w 신청 금액에 지연기간에 따른 이율(주2)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단,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되었을 경우 정상처리 시 지급액이 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보상합니다.
주1) 적립금 매각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단, 운용관리기관과 자산관리기관이 다른 경우 5영업일)
주2) 지연기간이 14일 이내 연 10%, 지연기간이 14일 초과 : 연 20%

[제출서류]

1. 필수서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2. 타 금융기관으로 받는 경우	타 금융기관 IRP 또는 요구불계좌 사본
3. 사망 퇴직한 경우	1) 대표수익자 지정합의서(은행양식) 2) 대표수익자 퇴직급여 수령계좌 통장사본(요구불계좌) (단, 대표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통장사본) 3)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망확인서(필요시 징구) 4) 상속인 전원의 실명증표 (전원 방문시) 5) 미방문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인감날인 필수) 6)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기본증명서(특정 또는 상세)
4. 가입자 단독청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등 본인의 퇴직사실 증명서류

